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8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한정애·조 국·민홍철

이학영 • 박희승 • 주철현

문진석 · 송옥주 · 한준호

이병진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2021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 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 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 2019년 10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음.

최근에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 너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 나.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 다.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 라.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 마.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 바.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 (안 제5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용자자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제5조의3제1항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를 "형의 집행,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처우"로, "법원"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 족부, 법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 3.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산한"을 "보호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8개월"을 "36개월"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를 교 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하여 근거리 시설 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고 소장은 위 이감

- 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의4(비밀유지 의무)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수용자자녀"란 「아동복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
	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u>말한다.</u>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
	<u>보호 방안</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u>형의 집행 및</u>	① <u>형의 집행,</u>
<u>수용자 처우</u> 에 관한 사항을 협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처우-
의하기 위하여 <u>법원</u> , 검찰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u> 여성가족부, 법원</u>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접견) ① (생 략)

-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 1.·2. (생 략)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 게 할 수 있다.
-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④ ~ ⑥ (생 략)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② (생 략)

<신 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 자는 자신이 <u>출산한</u> 유아를 교

제41조(접견)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
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삭 제></u>
<u><삭 제></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u>보호자인</u>

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 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 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 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 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

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

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 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 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 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

<u><신 설></u>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 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 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 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 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하여 근거리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 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 고 소장은 위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 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 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

	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53조의4(비밀유지 의무)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
	<u>니 된다.</u>